

전기제품 안전과 소비자 보호

- 제조물책임(PL)법 시행을 중심으로

Safety of Electric Products and Consumer Protection - based on Product Liability Act



글 / 羅京秀
(Rha, Kyung Soo)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전자파장해공동연구소
교육홍보담당 이사,
전기제품PL 상담센터 센터장.
E-mail: ksrha@esak.or.kr

Discussion on the importance of safety and globalization of household electric products, based on the growing concept of consumer sovereignty. Also in economic democracy, the enactment of product liability (PL) influences both the enhancement of consumer protection and entrepreneurial competitiveness.

1. 전기제품 안전과 국제화

전기제품 안전과 제조물책임의 일환으로 지금까지는 불법·불량 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험 및 재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목적으로 1973년 공업진흥청의 발족과 그 다음해인 1974년 1월 4일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1974년의 동법 제정 당시만 해도 국내전기용품 제조업체 수는 극히 소수인데다가, 품질수준도 매우 낮아 조악한 불법·불량 전기용품으로 인한 감전, 누전사고와 화재 등으로 인명피해 및 재산 손실이 매우 컸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 오늘날 전기용품 제조업이 국내경제성장의 견인차로서 주요기간산업이 되었고, 이제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전기공업국으로 도약하게 되었음은 실로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전기용품안전관리업무는 정확하게 설계되고 안전하게 제조된 전기용품 만이 제조·수입·유통하게 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인 일반 대중들의 안전

을 확보하는데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전 위해의 우려가 높은 전기용품 제조업체에 대한 등록과 제품의 안전인증,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의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후관리를 주축업무로 하고 있다. 그 동안 이러한 조처와 활동이 우리나라 전기용품의 안전성 제고와 품질향상에 기여한 바 크다는 것에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전기용품기술기준을 계속적으로 국제수준으로 상향조정해 왔다. 그래서 현재는 상기의 법과 기술기준을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기준과 일체화 시켰으며, 전기용품의 품질제고와 효율성 향상뿐만 아니라 에너지절약에도 힘써 왔다. 그리고 계속해서 국내 사용제품이 바로 수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수출 촉진 및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19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3개년 점진 계획으로 687개의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국제기준(IEC) 체제로 일대 개편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개별고시로 운용해 오던 687개 안전기준을 통합하여 한

개의 통합고시로 단순화시켰다. 그리하여 이용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하도록 전기용품안전기준 운용요령을 2002년 2월 19일자로 기술표준원고시 제2002-60호로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국제화시대에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국제기준(IEC) 체제로 개편하여 국제화시킴으로써 전기제품의 품질과 안전성향상 및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이었다. 앞으로도 전기용품안전기준의 국제기준(IEC) 체제 개편과 이에 대한 세부지침서를 발간하여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수출증대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전기용품안전기준의 제정과 개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02년도에는 100개를 추진하고, 2003년도 100개, 2004년도 100개를 각각 추진하여 통합 1,311개 안전기준을 IEC 체제로 전환시켜 나갈 계획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국제기준(IEC)과 일치화 시킨 전기용품안전기준에 대한 시험방법 및 기준적용에 대한 세부지침서를 작성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발간 보급하여 국제기준에 의한 시험절차 및 기준적용 등을 완전히 통일시켜서 시험성적서에 대한 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내 사용제품이 외국의 인증 획득 시 기술적 장애와 장벽을 사전에 해소하고 안전기준으로 인한 무역마찰을 최소화해야 할 것은 물론이다. 이와 동시에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 :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시 기술적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국가 간 상호간 인정협정 체결을 가속화시켜 수출증대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소비자주권의 의의

지금의 우리는 시장경제라는 큰 틀 안에서 생활

을 영위하고 있고 경제활동을 운용하고 있다. 경제적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재화(財貨)를 획득하고 사용하는 행위가 이른바 경제행위(economic action)인데, 시장경제는 소비자와 기업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현대의 경제이고, 시장가격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며 자유시장이라는 경쟁논리에 의하여 주도되는 경제를 말한다. 특히 이러한 시장경제 상황에서는 시장에서 소비자주권(consumer sovereignty)이 유감없이 행사될 수 있는 경제를 지칭하며, 또한 민주주의의 근본개념이 작동되는 경제이기도 하다. 시장경제에서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구매행위라는 이른바 소비자의 경제투표(economic voting) 행위에 의하여 생산·제조되고 소비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결정된다. 이는 시장에서 소비자가 어떤 종류의 상품과 서비스를 원하느냐에 따라 생산되고 소비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특정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거나 혹은 구매하지 않음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제투표의 권리를 자의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러한 소비자의 경제투표를 통해 소비자주권이 여실히 행사되고 이에 따라 자원이 공평하게 배분되고 경제구조도 결정되고 확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시장경제는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중심의 경제이고 실제로 소비자주권이 충분히 행사될 수 있는 경제이다.

더욱이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고 남과 자유로이 경쟁하는 자유경쟁 체제 하에서의 시장경제에서는 개개인의 취사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고 이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수반된다. 이와 동시에 소비자나 기업과 같은 시장참여자의 개개인의 자주적인 결정이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수렴되는 소의 경제민주주의(economic democracy)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

다. 스미스(Adam Smith)의 경제학에서, 각자의 이기심에 바탕을 둔 경제행위는 종극적으로는 공공의 복지로 이끈다고 한 예정조화적(豫定調和的) 사상이다.

그러나 만일 시장에 시장운영규칙(rule of game)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시장경제 관련제도도 이에 걸맞게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이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소비자주권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소비자주권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상실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소비자나 기업과 같은 시장참여자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그들에게 자유와 책임의식이나 자율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면, 소비자주권은 확실히 시장에서 제대로 발휘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소비자의 주권이 상실되면 시장에서 변별력이 없이 옥석이 구분되지 못하므로 자연히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제의 비효율성이 증폭되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복리는 크게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소비자의 경제투표에 의한 경제민주주의의 실현도 어려워져서 크게 후퇴하게 될 것이다.

과거 우리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인위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였고 또 상품이 적어서 파는 쪽이 유리한 시황(市況)인 이른바 판매자시장(seller's market)으로 공급자를 위주로 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하였는데, 따라서 관치금융의 만연을 경험하였다. 이로 인해 시장기능은 파행을 거듭했고 시장은 심각할 정도로 왜곡되었으며, 그 결과 시장경쟁도 본래의 제 기능을 잃고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부작용의 하나로 소비자는 시장경제기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되어 오해를 낳았고, 일반 소비생활에 있어서도 자유와 책임, 자율의식과 자주능력이 현저하게 결여되는 처

절한 현상이 되었다.

그 결과로 안타깝게도 우리는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되지 못한 채 소비자주권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도 못하게 되었다. 즉 소비자의 경제투표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 결국 소비자의 후생은 크게 감소 내지 후퇴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우리경제 전반에서 국제경쟁력의 상실이라는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다행히 우리는 시장운영규칙이나 시장경제 관련제도의 정비와 구축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경제 각 부문에서도 합리화와 구조개혁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으며, 시장경쟁도 다소나마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소비자는 자유와 책임 그리고 자주성(autonomy)과 자율의식을 가지고 그들의 변별력을 토대로 하여 취사선택과 선호를 시장에서 경제투표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마음껏 표출하여 소비자주권을 유감없이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시장에서 자유로운 소비자의 경제투표에 의한 소비자주권 행사만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경제가 알차게 더욱 진척되고 따라서 국제경쟁력도 제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소비자는 시장에서 그들 개개인의 경제투표를 통해서 소비자주권을 유감없이 발휘하여야만 한다. 그럼으로써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소비자의 복리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자주권의 행사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장래 빠른 시일 내에 경제민주주의를 우리 사회에 깊숙하게 정착시켜 우리토양에 맞게 토착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조물책임(PL)법

3.1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조물책임 대상

우리는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다.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국내외 여기저기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가스 폭발, 화재 발생, 비행기 추락사고, 자동차 급발진, 불량 식품, 환경오염, 공해, 생태계 파괴 등 우리의 소비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재해와 사고로부터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다치거나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귀중한 생명까지 잃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참담한 현실이다.

21세기에 들어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사회로 접어들면서 소비자는 제품의 제조공정이나 성분이나 성능 등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소비자와 제조업자 사이에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하여 소송수행 및 입증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제조물책임법은 이러한 현실을 여실히 반영한 제도로서 결함 있는 제조물로부터 사고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과 유럽 등 선진제국에서는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에 이르러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입법논의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제조업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잠잠하다가 다시 1990년 들어와서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여러 소비자단체에서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관한 집중적인 연구를 시작하여 드디어 1994년 제조물책임법의 입법 방향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만사지탄이 있지만 1998년 정부는 법안을 마련해서 1999년 7월 입법예고 하였으며, 이

법안은 위원입법으로 국회에 상정해 같은 해 12월 정기국회를 통과했다.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기업체의 대비가 필요함을 고려해서 장장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드디어 지난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제조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조물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로서는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의 이러한 고충을 심분 고려한 법이 바로 제조물책임법이다.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소비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다.

그래서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해야만 하는 현행 민법 제750조와는 달리,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결함의 존재와 피해와의 인과관계만 입증하면 되는 것으로 소비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으로 소비자는 보다 안전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피해구제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즉 소비자는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 손해의 발생사실, 그리고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쉽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기업에게는 제조물로 인한 피해에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여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제조물을 생산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것은 곧 소비생활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고 동시에 일반대중의 행복도를 제고하게 된다.

제조물책임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되게 된다. 그리고 제조업자의 책임대상이 되는 제조물에는 우

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제조물이 포함된다. 동산이나 지적재산권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 등을 빼면 거의 모든 제조물이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

크게 보아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 대상인데, 이를테면 공산품 등과 같은 동산, 자동차나 가전 제품과 부품 등과 같은 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그리고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나 창호 같은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이 모든 것이 PL법의 대상이 된다. 다만, 아파트·빌딩·교량 등의 부동산이나 제조나 가공되지 않은 농·수·축·임산물 등의 1차 상품은 PL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제조물책임이 인정되는 결함은 제조물책임법에서는 결함의 유형으로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을 예시하고 있다. 이를테면 제조상의 결함으로서는 이물질 혼입이나 조립불량이 있고, 설계상의 결함에는 녹슴기 사건과 같은 안전설계 미비가 대표적이다. 또 표시상의 결함은 취급설명서의 설명부족이나 부적절한 경고 라벨과 같은 것이고,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foreseeable) 안전성(safety)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지칭한다.

3.2 손해발생 책임소재와 제조업자 면책사항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나?'가 중요하다. 우선 제조업자가 책임이 있다. 또 원재료나 부품 및 완성품 제조업자가 책임을 진다. 그리고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한 자 또는 제조업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와 제조물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이른바 수입업자에게 책임이 있다. 다시 말해서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발생 시 그 책임은 제조물의 제조업자가 지며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급자나 유통업자도 책임을 진다. 즉 제조업자가 불명일 때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나 대여에 의하여 공급하는 자도 책임을 진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을 잃거나 신체나 건강을 해치게 된 경우는 물론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이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모든 손해에 대해 피해소비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가 결함 있는 제조물 자체에만 그친 경우, 예컨대 TV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다른 제품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다친 사람도 없이 TV만 타버린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럴 때는 하자담보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 등 기존의 민사책임법리에 따라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조물에 결함이 있더라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손해의 원인이 제조물의 결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제조업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러한 면책의 경우로는, 첫째,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이다. 즉 제조업자가 자기의의사와 상관없이 제조물이 유통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일 것이다. 둘째,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이나 기술수준으로서는 도저히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경우이다. 이는 제조업자에게 신제품 개발로 인한 위험을 부담시키는 경우에 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저해하게 되는 것을 고려한 조항이다. 셋째, 결함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이다.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하기 위해 법령에 의한 기준을 준수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부담하지 않도록 고려한 면책조항이다. 넷째, 결함이 원재료나 부품 제조업자가 완성품 제조업자의 설계나 지시에 따라서 제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이 발생한 경우이다. 이는 원재료나 부품 공급업자에 대한 정책적 보호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사유가 인정되어도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피해예방을 위해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때는 면책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조업자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리콜을 시행해 사후에 제조물 결함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방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3.3 손해배상청구권 시효와 피해소비자의 대처사항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제조업자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조물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기간 내에 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손해 및 제조업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3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 또 제조업자 등이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제조물이나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 증상이 나타나는 제조물의 경우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해서 10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는 제조물책임법의 본래의 정신에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고, 동시에 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용수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항상 안전성을 확인하며 제조물을 순리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더라도 분에 넘치는 기대나 턱없는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는 일에 소비자도 같이 동참해서 건전한 소비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지나친 부주의로 인한 터무니없는 오용이나 남용까지도 제조물

책임법이 보호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발생시 피해소비자는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증거물 및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먼저, 결함 제조물 및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한다. 증거물 및 증빙자료가 확보되면 이에 대한 분석과 입증에 필요하다. 피해를 입었을 때는 증거물 및 증빙자료를 확보한 후 즉시 소비자단체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상담을 통해 소비자는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사업자로부터 피해구제를 받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게 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관련 자료의 검토 및 분석, 사실조사와 확인, 증거확보, 피해액의 산정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객관화·수량화하고 사건 담당직원이 그 결과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제시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권고한다. 합의권고 절차는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그 기간 내에 양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인 분쟁조정 절차로 옮겨진다. 분쟁조정은 보다 공정한 사건의 해결을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그것은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같이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렇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해 조정결정을 내린다. 다만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피해구제 접수만 받는다. 사업자와 사업자간 손해에 대해서는 다른 피해보상기구나 민사법원을 이용하여야 한다.

4. 맺음말

제조물책임(PL)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의 전기제품 제조업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기제품

제조업체의 준비나 대응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PL법은 현행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 소비자보호법이나 리콜제도보다도 소비자주권을 대폭 강화한 민사법적 특별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전기제품 제조업체들이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결함 그 자체로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제도다. 따라서 기존 법체제와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기제품은 물론 전기도 일반제조물과 함께 PL법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전기제품 제조업체는 본 PL법 시행에 대하여 전진공공하면서도 충분하고 마땅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실정에 놓여 있다. 자구책으로 자체내부에 대책반을 설립해서 운영하려 하거나 혹은 태스크 포스팀(task force team),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기타 사항을 준비 중인 업체는 극소수 업체에 달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전기용품 제조업체는 무려 3,000개가 넘고 전기용품을 수입하는 업체도 1,000개가 넘어, 모두 합해서 4,000개 이상의 전기제품 관련 업체가 있다. 이 중에서 자체적으로 대응준비를 하는 업체는 전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200여 업체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문제는 전기제품이 대부분이 가전제품이므로 일반 가정에서 남녀노소가 수시로 자유로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사소한 피해부터 화재까지 전기제품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건이 많아 분쟁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의 PL법 시대에서는 전기제품으로 인한 피해자가 제시한 손해 배상에 대해 제조물의 결함과 인과관계를 극명하게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제조자와 피해 소비자의 분쟁도 속출할 것으로 예견된다.

누구의 과실로 단정될 수 없는 전기제품의 결함, 사용자의 오용(misuse)과 남용, 가전제품의 전자파유해 논란, 내용연수를 넘긴 전기제품으로 인한 피해사항 등 갖은 시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정은 법원에서 내릴 것이다. 하지만 화해나 조정과정에서 민간중도의 PL조정센터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

인과관계를 규명하기도 어렵고, 법원으로 가지고 갔을 때 드는 비용이나 소요되는 장기간 등 소비자와 제조자 모두를 피폐시킬 것이다. 이러한 유사한 예는 PL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미국, 독일, 일본에서 그 동안 자주 보아온 것이다. 이것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양측 일보씩 양보하여 win-win 전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결국 PL상담센터 같은 것이 될 것이다. 미국에서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법원의 분쟁해결)이 피해소비자나 제조업체 공히 유효적절하게 이용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또 PL책임보험은 전기제품 제조업체의 가장 효율적인 대응책의 하나라는 것은 지금까지 PL법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예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PL보험이 다른 선진외국에서는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보험 회사들은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여 우리나라 토양에 맞는 PL보험 상품을 적극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원고 접수일 2002. 9. 3)